# 표12-2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대상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코 드
급성 심근경색증	121
후속 심근경색증	122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123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 받은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2. 이 약관에서 정한 보장 여부의 판단은 질병의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분류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분류코드의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표12-3 특정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약관에서 정한 "특정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대상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코 드
급성 심근경색증		I21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정한 "특정 급성심근경색증"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 확정 받은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2. 이 약관에서 정한 보장 여부의 판단은 질병의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분류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분류코드의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표23 당뇨병 대상 분류표



약관에서 정한 "당뇨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대상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코 드
1형 당뇨병	E10
2형 당뇨병	E11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정한 "당뇨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 받은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2. 이 약관에서 정한 보장 여부의 판단은 질병의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분류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분류코드의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표24 1~5종 수술분류표



## 1. 일반 질병 및 재해 치료목적의 수술

구분	수술명	수술 <del>종</del> 류
	1. 피부이식수술(25㎡이상인 경우), 피판수술(피판분리수술, Z flap, W flap 제외)	3
	2. 피부이식수술(25때미만인 경우)	1
피부, 유방의	3. 유방절단수술(切斷術, Mastectomy)	3
수술	4. 기타 유방수술(농양의 절개 및 배액은 제외)	
	[단, 치료목적의 Mammotomy는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1
	5. 골(骨) 이식수술	2
	6. 두개골(頭蓋骨, cranium) 관혈수술	
<del>근골</del> (筋骨)의 수술	[비골(鼻骨) · 비중격(鼻中隔) · 상악골(上顎骨) · 하악골(下顎骨) · 악관절(顎關節)은 제외함]	3
- 년 [발정술(拔釘術)	7. 비골(鼻骨) 수술	1
등 내고정물	[비중격 만곡증(彎曲症)수술, 수면중 무호흡 수술은 제외]	
제거술은 제외함]	8. 상악골(上顎骨), 하악골(下顎骨), 악관절(顎關節) 관혈수술	2
[치(齒) · 치은 ·	9. 척추골(脊椎骨), 골반골(骨盤骨), 추간판 관혈수술 10. 쇄골(鎖骨), 견갑골(肩胛骨), 늑골(肋骨), 흉골(胸骨) 관혈수술	3
치근(齒根)·	10. 페르(與有), 신답글(用所有), 특글(肋有), 퓽글(胸有) 선글구글 11. 사지(四肢) 절단수술(다지증에 대한 절단수술은 제외함)	۷
치조골(齒槽骨)	11-1. 손가락, 발가락 절단수술	
의 처치,	[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것]	1
임플란트	11-2. 기타 사지(四肢)절단수술	3
(Implant) 등	12. 절단(切斷)된 사지(四肢)재접합수술(再接合手術)	3
치과 처치 및 수술에 수반하는	[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것]	J
구절에 구진하는 것은 제외함]	13.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u> </u>	13-1. 손가락, 발가락의 골 및 관절 관혈수술	1
	13-2. 기타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2
	14. 근(筋), 건(腱), 인대(靱帶), 연골(軟骨) 관혈수술 15. 만성부비강염(慢性副鼻腔炎) 근본수술(根本手術)	1
	16. 후두(喉頭) 관혈적 절제수술	3
	17.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수술	1
*******	18. 기관(氣管), 기관지(氣管支), 폐(肺), 흉막(胸膜) 관혈수술	
호흡기계, 흉부	[개용술(開胸術, Thoracotomy)을 수반하는 것]	4
(胸部)의 수술	19. 폐장(肺臟) 이식수술	5
	[수용자(受容者)에 한함]	
	20. 흉곽(胸郭) 형성수술(形成手術)	3
	21. 종격종양(縱隔腫瘍), 흉선 절제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4

[별첨2] 표 24. 1~5종 수술분류표

구분	수술명	수 <mark>술종</mark> 류
	22. 혈관관혈수술[하지정맥류 및 손가락·발가락은 제외]	3
	23. 하지 정맥류(靜脈瘤) 근본수술 및 손가락·발가락 혈관관혈수술	1
	24. 대동맥(大動脈), 대정맥(大靜脈), 폐동맥(肺動脈), 관동맥(冠動脈) 관혈수술 [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5
순환기계, 비장(脾腸)의 수술	25. 심막(心膜)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4
10(肝肠) 二十2	26. 심장내(心藏內)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5
	27. 심장 이식수술 [수용자에 한함]	5
	28. 체내용(體內用) 인공심박조율기(人工心搏調律機, Artificial pacemaker) 매입술(埋入術)	3
	29. 비장(脾腸) 절제수술	3
	30. 이하선 절제수술	3
	31-1. 악하선, 설하선 절제수술	2
	31-2. 기타 타액선 절제수술(타석제거는 제외)	1
	32. 식도(食道) 이단술(離斷術) [개용술, 개복술(開腹術, Laparotomy)을 수반하는 것]	4
	33. 위 절제수술(胃 切除手術, Gastrectomy)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4
	34. 기타의 위·식도 관혈수술 [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3
	35. 간장(肝臟), 췌장(膵臟)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4
	36. 담낭(膽囊), 담도(膽道)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3
소화기계의	37. 간장 이식수술 [수용자에 한함,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5
수술	38. 췌장 이식수술 [개복술을 수반해야 하며 수용자에 한함] [단, 랑게르한스 소도(Islet of Langerhans)세포 이식수술은 제외함]	5
	39. 탈장(脫腸) 근본수술	1
	40. 전신성 복막염(全身性 腹膜炎, Generalized peritonitis) 수술	2
	41. 충수(蟲垂)절제술(충수염관련 충수주위 농양수술, 국한성 복막염 수술 포함), 맹장봉축술(盲腸縫縮術)	2
	42. 직장탈(直腸脫) 근본수술	1
	43. 소장(小腸), 결장(結腸), 직장(直腸), 장간막(腸間膜) 관혈수술 [개 복술을 수반하는 것] 단, 직장탈근본수술은 제외	4
	44. 치루(痔瘻), 탈항(脫肛), 치핵(痔核) 근본수술 [근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수술은 제외함]	1

구분	수술명	수술종류
	45. 신장(腎臟), 방광(膀胱), 신우(腎盂), 요관(尿管)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경요도적 조작 및 방광류·요실금 교정수술은 제외]	4
	46. 요도 관혈수술 [경요도적 조작은 제외함]	2
	47. 방광류·요실금 교정수술	1
	48. 신장(腎臟) 이식수술(移植手術) [수용자에 한함]	5
	49. 음경(陰莖) 절단수술	3
비뇨기계 ·	[포경수술 및 음경이물제거수술은 제외]	
생식기계의 수술	50. 고환(睾丸), 부고환(副睾丸), 정관(精管), 정색(精索), 정낭(精囊)관	2
[인공임신중절수	혈수술, 전립선(前立腺)관혈수술	1
술은 제외함]	51. 음낭관혈수술 52. 자궁, 난소, 난관 관혈수술	- 1
	[단, 제왕절개만출술 및 경질적인 조작은 제외]	2
	53. 경질적 자궁, 난소, 난관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	1
	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ı
	지급이 가능합니다.]	
	54.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	1
	55. 질탈(膣脫)근본수술	1
내분비기계의	56. 뇌하수체종양(腦下垂體腫瘍) 절제수술	5
수술	57. 갑상선(甲狀腺)·부갑상선(副甲狀腺) 관혈수술 58. 부신(副腎) 절제수술	3 4
	59. 두개내(頭蓋內) 관혈수술	
니거레이	[개두술(開頭術, Craniotomy)을 수반하는 것]	5
신경계의	60. 신경(神經) 관혈수술	2
수술	61. 관혈적 척수종양(脊髓腫瘍) 절제수술	4
	62. 척수경막내외(脊髓硬膜內外) 관혈수술	3
	63. 안검하수증(眼檢下垂症)수술 (안검내반증 제외)	1
	64. 누소관(淚小管)형성수술 (누관튜브삽입술 포함)	1
	65. 누낭비강(淚囊鼻腔) 관혈수술	2
	66. 결막당(結膜囊) 형성수술	2
시각기의	67. 각막, 결막, 공막 봉합수술	2
수술	68. 각막, 공막 이식수술 69. 전방(前房), 홍채(虹彩), 유리체(琉璃體) 관혈수술	2
[약물주입술은	70. 녹내장(綠內障) 관혈수술	3
제외]	71. 백내장(白內障), 수정체(水晶體) 관혈수술	1
	72. 망막박리(網膜剝離)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	,
	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_
	지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수술명	수술종류
	73.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 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시각기의 수술 [약물주입술은 제외]	74. 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 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75. 안구적출술, 조직충전술(組織充塡術)	3
	76. 안와내종양절제수술 77. 관혈적 안와내(眼窩內) 이물제거수술(異物除去手術)	3
	78. 안근(眼筋)관혈수술	1
	79. 관혈적 고막(鼓膜) 성형술 [고막 패치술은 제외]	2
	80. 유양동 절제술(乳樣洞切除術, mastoidectomy)	2
청각기(聽覺器)의	81. 중이(中耳) 관혈수술 [중이내 튜브유치술 제외]	2
수술	82. 중이내(中耳內) 튜브유치술 [고막 패치술은 제외,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 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1
	83. 내이(內耳) 관혈수술	3
	84. 상기 이외의 개두술(開頭術) 85. 상기 이외의 개흉술(開胸術)	3
	86. 상기 이외의 개복술(開腹術)	2
상기 이외의	87.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破碎石術, E.S.W.L)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 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술	*체외충격파치료술(E.S.W.T)은 제외	
[검사, 처치, 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음]	88.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이 가능합니다.]	
	88-1. 뇌, 심장	3
	88-2. 후두, 흉부장기(심장 제외), 복부장기(비뇨, 생식기 제외), 척추, 사지관절(손가락, 발가락은 제외)	2
	88-3. 비뇨, 생식기 및 손가락, 발가락	1

㈜ 상기 1~87항의 수술 중 내시경(Fiberscope)을 이용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등에 의한 경피적(經皮的, Percutaneous) 수술은 88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복강경·흉강경에 의한 수술은 해당부위(1~87항)의 수술로 적용합니다.

#### Ⅱ. 악성신생물 치료 목적의 수술

수술명	수술 <mark>종</mark> 류
1. 관혈적 악성신생물(惡性新生物) 근치수술(根治手術, Radical curative surgery) 단, 기타피부암(C44) 제외	5
[내시경 수술, 카테터 · 고주파 전극 등의 경피적 수술 등은 제외함]	
1-1. 기타피부암(C44)	3
2. 내시경 수술, 카테터 · 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악성신생물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3
3. 상기 이외의 기타 악성신생물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3

- (취) 1. 제자리암·경계성종양에 대한 수술은 'l. 일반 질병 및 재해치료 목적의 수술' 항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2. 카테터(Catheter)를 이용한 흡인·천자·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3.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수술은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에 준하여 5종 수술로 인정합니다.
    - 조혈모세포이식술(일련의 과정 '추출, 필터링, 배양, 제거, 주입'을 모두 포함하여 1회의 수술로 인정)을 제외한 근치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약물 등을 투여하기 위한 시술(예: 중심정맥삽관술)만 시행할 경우에는 5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Ⅲ. 악성신생물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

방사선 조사 분류항목	수술 <mark>종</mark> 류
1. 악성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악성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 (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定位的 放射線 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를 포함 함]	
2.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 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3

(주)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1~5종 수술분류표 사용 지침)

- 1. "수술"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1~5종 수술분류표>에 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수술"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주사기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経)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 2. '관혈(觀血)' 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 3. '근본(根本)' 혹은 '근치(根治)' 수술이라 함은 일회의 수술로 해당 질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수술을 말합니다.
- 4.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이라 함은 관혈적 방법을 통해 악성신생물의 원발 병소를 완전히 절제, 적제, 적출하고 혹은 곽청술을 함께 실시한 경우입니다.
- 5. <1 ~ 5종 수술분류표> 상에 열거되지 않은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에 대한 인정 및 적용 기준<1 ~ 5종 수술분류표> 에서의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은 상기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여야 하고 약물투여치료, 방사선조사치료 또는 기타의 보존적 치료로 분류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 1) 1 ~ 5종 수술분류표상의 수술 이외에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치료한 경우 1~5종 수술분류표상의 동일부위 수술로 봅니다. 이 때에 해당 최신수술기법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2) 단, 이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이 본질적으로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인 경우에는 <1~5종 수술분류표> 중 '일반 질병 및 재해치료 목적의 수술' 88항 (악성신생물의 경우는 '악성신생물 치료목적의 수술' 2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 6. '악성 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선형가속기(LINAC)에 서 발생되는 가는 방사선(Pencil beam)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악성 신생물을 향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동시에 악성신생물의 움직임을 병변 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치

## 료하는 방법입니다.

- 7.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나이프 (Gammaknife)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정위 좌표계를 이용하여 코발트 60 방사성 동위원소 (Co-60) 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두개강 내의 신생물을 향해 집중 조사함으로 두개(頭蓋)를 열지 않고도 수술적 제거와 같은 효과를 내는 치료를 말합니다.
- 8. 다음과 같은 수술은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에서 보장을 제외합니다.
  - 1) 미용 성형상의 수술
  - 2)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3)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 4)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